

『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5월 17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가. 「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시설 이용료를 50% 감면 받고 있으나, 여성 관련 시설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천시 관내 시설에 대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여성 관련 시설에 대하여도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19조제7호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제19조제8호로 변경(안 제19조)

나. 사용료 감면대상에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를 추가
(안 제19조)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함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16년 5월 27(금)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22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jbkim814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 : ○ 성 명 : 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단서 중 “여성회관의 수영장 이용은 여성에 한한다.”를 “여성회관의 수영장은 여성만 이용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19조 각 호 중 “제7호”를 “제8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“제7호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여성 관련 시설의 이용대상)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여성문화회관의</u> <u>수영장 이용은 여성에 한한다.</u>	제5조(여성 관련 시설의 이용대상)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여성문화회관의</u> <u>수영장은 여성만 이용할 수 있다.</u>
제19조(사용료 등의 감면)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 을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생활체 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50퍼센 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 1. ~ 6. (생략) <u><신 설></u> 7. (생략)	제19조(사용료 등의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7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</u> <u>상의 자</u> <u>8. (현행과 같음)</u>

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

관계법령	☐ 지방자치법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☐ 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) ☐ 지방자치법 제136조(사용료), 제139조제1항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☐ 노인복지법 제26조(경로우대)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납골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제26조(경로우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·능원·박물관·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여성관련시설 사용(이용)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지출을
수반하지 않음

4. 작성자

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김 연 임